

대구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가단1915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가액배상)]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장승우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6. 3.
판 결 선 고 2021. 7. 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0. 5. 30.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20. 10. 19. 접수 제255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01. 5. 2. E 주식회사로부터 1,649,648원을 대출받았고, C는 그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아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2016가소3017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9. 7.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1,649,643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5. 12.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6. 10. 5.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채권'이라 한다).

다. C의 부친인 F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상속분 3/7)와 자녀인 C, G(상속분 각 2/7)가 있다.

라. 망 F 사망 이후인 2020. 10.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영천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위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인 2/7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므로(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이상, C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C가 의식소실, 발작 등으로 인해 일체의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C의 사해의사 추정을 부정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의 상속지분을 양도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는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20. 10. 28.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600만 원 및 채권최고액 2,200만 원)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나, 이 법원의 주식회사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는 모두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부를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원물반환의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효선

[별지]

목 목

1. 경상북도 영천시 대 172㎡

2. 경상북도 영천시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영천시

새마을복조 기와지붕 평가건 주택

1동 51.22㎡

